



가격표시제 실시 안내

가격표시제란?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

가격표시제 주요내용



▶ 판매가격 표시

구분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 경과	근거
판매 가격 표시	판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점포 33m²(대도시 17m²) 이상 소매점포 시·도지사 지정 시장 또는 지역 	백화점, 슈퍼마켓 등 51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73년 최초 도입 후 표시대상 지속 확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 판매가격: 판매(소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동일상품의 경우에도 점포간 판매가격이상이 할 수 있음)
- ▶ 표시방법: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함(예: 판매가 000원 또는 ₩ 000 등)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 가능(예: 품목 000, 판매가 000원 등)
- ▶ 표시크기: 15포인트 이상(글자당 크기: 가로 3mm X 세로 4mm)

▶ 단위가격 표시

구분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 경과	근거
단위 가격 표시	판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중대규모점포(대기업 및 대규모점포 경영회사와 그 계열 회사의 직영·가맹 슈퍼마켓)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114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99년 최초 도입(15종) 확대('04 33종 → '09 83종 → '13 84종 → '25 114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 단위가격: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 10ml, 100g 등)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
- ▶ 품목 선정기준: 상품의 용량, 규격 등의 종류가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 ▶ 표시방법: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함
(예: 00g당 가격 000원)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별도 표시 가능(예:

품목	내용량	판매가격	10ml당 가격
△△ 참기름	300ml	4,710원	157원
- ▶ 표시크기: 10포인트 이상(글자당 크기: 가로 2mm X 세로 3mm)

▶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

구분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 경과	근거
권소가 표시 금지	사업자(제조·유통·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해당 없음	가전제품, 의류 등 47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99년 최초 도입(12종) 변경('04 32종 → '09 279종 → '11 274종 → '17 47종) 	소비자기본법 제12조

- ▶ 권장소비자가격 등: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
- ▶ 품목 선정기준(부당행위 유형)
 -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
 -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
- ▶ 표시방법: 표시금지 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해서는 안됨

단위가격 표시의무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품목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구분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총 114 종	76종 두부(100g), 건면(100g), 생면(100g), 숙면(100g), 유탕면(100g), 견과류(100g), 밀가루(100g), 부침가루(100g), 빵가루(100g), 시리얼류(100g), 만두류(냉동)(100g), 스프(100g), 즉석국(100g), 즉석덮밥(100g), 즉석밥(100g), 즉석죽(100g), 탕(100g), 이음식(100g), 포기김치(100g), 과일가공품(100g), 건포류(중량단위)(100g), 생선통조림(10g), 어묵(100g), 액젓(100ml), 젓갈(10g), 조미김(10g), 참치캔(10g), 베이컨류(10g), 소세지류(10g), 햄류(10g), 가공유(100ml), 버터류(100g), 분유(100g), 우유(100ml), 유산균발효유(10ml), 치즈(10g), 빙과(10ml), 아이스크림류(10ml), 초콜릿류(10g), 코코아(10g), 코코아가공품(10g), 잼류(100g), 과자(10g), 빵류(10g), 추잉검(10g), 캔디류(10g), 들엿(100g), 설탕(100g), 벌꿀(100g), 식용유(100ml), 참기름(10ml), 식물성크림(커피용)(10g), 마가린류(100g), 간장(100ml), 고추장(100g), 된장(100g), 쌈장(100g), 청국장(100g), 고춧가루(100g), 마요네즈(100g), 복합조미식품(10g), 소스류(액상)(100ml), 식염(100g), 소스류(액상제외)(100g), 식초(10ml), 카레(100g), 케찹(100g), 차류(액상제외)(10g), 가공두유(100ml), 과·채음료(100ml), 과·채주스(100ml), 커피(액상제외)(10g), 탄산음료류(100ml), 혼합음료류(100ml), 주류(100ml), 생수(100ml)	35종 위생백(매), 램(m), 호일(m), 키친타올(m), 주방세제(액상)(100ml), 세탁비누(고형)(100g), 세탁세제(가루형)(100g), 살충제(100ml), 세탁세제(액체형)(100ml), 섬유유연제(100ml), 섬유탈취제(100ml), 습기제거제(개), 살균소독제(100ml), 건전지(개), 부탄가스(100ml), 치약(10g), 구강청결제(100ml), 칫솔(개), 손세정제(100ml), 샴푸(100ml), 세면비누(고형)(10g), 바디워시(100ml), 린스(100ml), 염색약(10g), 로션(100ml), 립밤(10g), 선크림(10ml), 마스크(개), 면도날(개), 물티슈(매), 생리대(개), 미용티슈(상자)(10매), 종이기저귀(개), 화장지(롤)(10m), 반려동물사료(100g)	3종 농산물(중량단위)(100g), 수산물(중량단위)(100g), 축산물(중량단위)(100g)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

구분	가전제품	의류	기타
총 47 종	10종 TV,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캠코더, 전기면도기, 전기발삼, 청소기, 전자레인지	23종 남자외의, 남자상의, 남자학생복, 남자하의, 남자내의, 여자외의, 원피스, 여자상의, 여자 학생복, 여자하의, 여자내의, 점퍼, 티셔츠, 스웨터, 청바지, 운동복, 등산복, 아동복, 유아복, 양말, 모자, 넥타이, 장갑	14종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를 포함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부과대상자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	과태료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표시의무자	시정권고	30	50	200	500
•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표시의무자	시정권고	20	30	100	300
•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는 행위	표시한 자	500	1,000			
• 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 가격표시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명령위반자	시정권고	100	300	500	1,000

* 근거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 위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상세한 감경 기준은 위 근거 법령 참조)
 * 기타 문의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2), 각 시·도 및 시·군·구 경제정책과